

제4차 WTO 각료회의와 수산분야 시장개방화 대책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I. 서론

•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사회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그 속도는 우리의 의식이나 정책적, 제도적인 대응속도를 능가하고 있을 정도임.

• 최근 몇 년간 수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를 검토해보면, 크게 두 가지 국제사회의 결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하나는 신해양법 협약의 발효이며, 또 하나는 WTO 체제의 출범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는 신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수산자원 자국화 추세 및 신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며,

- 후자는 WTO를 중심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압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임.

-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산업계에게 부여된 시급한 현안일 것임.

•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함. 즉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사한 결정들의 영향범위는 간접적이었으며 부분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예시한 두 가지 국제사회의 결정은 기존의 국제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큰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소용돌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未來像)을 도출하기 위해, 이상의 두 가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일 것임.

• 그러나 여기서는 지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기초하여, 앞으로 진행될 수산분야의 실무협상 전망과 대책에 한정하여 고찰할 것임.

II. 수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적 위상

1.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황

•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오랫동안 농업과 함께 국민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음. 수산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 39.2%를 공급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41.1kg을 공급하고 있음(최근 5년간).

• 전국의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1990년대에 들어와 매년 약 2~3천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도 어가호수는 1991년 대비 18.5% 감소한 것 97천 8백호로 나타났음(연간 평균 2.7% 감소).

• 1999년도 어가구원수는 1991년 대비 약 33% 감소한 315천명으로,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어업종사자수는 1991년 대비 약 16.6%

〈표 1〉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공급 추이

연도별	수산물 소비 (연간 kg/1인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 (g/1인1일당)			
	계	어패류	해조류	계	축산물	수산물	점유율 (%)
1970	17.3	14.7	2.6	10.66	4.07	6.59	61.8
1980	27.0	22.5	4.5	20.15	9.49	10.66	52.9
1985	37.2	30.7	6.5	28.52	12.08	16.44	57.6
1990	36.2	30.5	5.7	33.15	17.25	15.88	47.9
1991	35.9	28.9	7.0	32.39	17.19	15.19	46.9
1992	40.0	29.6	10.4	33.57	18.46	15.10	45.0
1993	43.3	31.6	11.7	35.49	19.45	16.04	45.2
1994	44.9	32.5	12.4	36.39	19.73	16.66	45.8
1995	45.1	33.4	11.7	39.28	22.87	16.41	41.8
1996	43.7	34.4	9.3	41.13	24.10	17.03	41.4
1997	43.6	32.0	11.6	40.24	24.58	15.66	38.9
1998	34.7	27.2	7.5	37.38	23.85	13.54	36.2
1999(잠정)	38.3	30.7	7.6	40.76	25.49	15.27	37.5

자료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식품 수급표 (각 연도).

감소한 173천명으로, 연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99년도 가구당 어가소득은 18,428천원으로 연평균 9.3%씩 증가하였으나,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 19.0%, 농가소득 증가율 11.4%에 크게 미달, 농가소득과의 격차도 점차 심화되는 현상임.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1960년대의 자급시기, 1970년대의 원양어업의 해외어장 진출시기에 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어획된 수산물은 중간 수요용인 가공용과 최종 소비용으로 이용되는 선어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어용 이용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공용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1997년도 어업형태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5.8% 감소한 1,367천 톤이며, 양식어업은 16.0% 증가한 1,015천 톤, 내수면은 6.7% 증가한 32천 톤이고, 원양어업은 16.1% 증가함.

- 특히, 신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양어업 생산량도 신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어장축소 및 어장확보 곤란으로 해외어장개척 및 어업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산량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1차산업중 유일하게 2000년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며(2001년도 적자 예상),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에는 국가전체 수출액의 22%(1962년도 기준)를 차지

〈표 2〉 어가구원 및 어업종사자

(단위 : 천호, 천명)

연도	가구	가구원	어업종사자
1991	120	470	205
1992	116	425	207
1993	114	405	207
1994	110	382	198
1995	104	347	176
1996	102	330	172
1997	100	323	173
1998	98.9	322	173
1999	97.8	315	171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각연도),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 3〉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의 증가율

(천원, %)

	1990	1995	1999	연평균증감율
어가소득(A)	10,023	18,780	18,428	9.3
농가소득(B)	11,026	21,803	22,323	11.4
(A/B, %)	90.9	86.1	82.6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99 어업기본통계 및 어가경제 분석 결과 (내부자료).

하기도 한 수출산업이었음.

- 1990년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산물 수출은 1990년대 초반 약간씩 증가 하던 것이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1998년은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비감 소,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수산물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체의 수출금액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1년 2.3%에서 1998년에 1.0%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산물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0.6%~0.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 3년 동안(1996-1998년)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산부문의 흑자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이상과 같은 추세는 2001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어, 2001년을 정점으로 수산물 무역수지는 이번이 없는 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그림 1〉 참조).

2.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한국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식량산업으로서 있음.
-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도 오래동안 중요한 • 식량산업.
-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 -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 회문화적 기능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한국형 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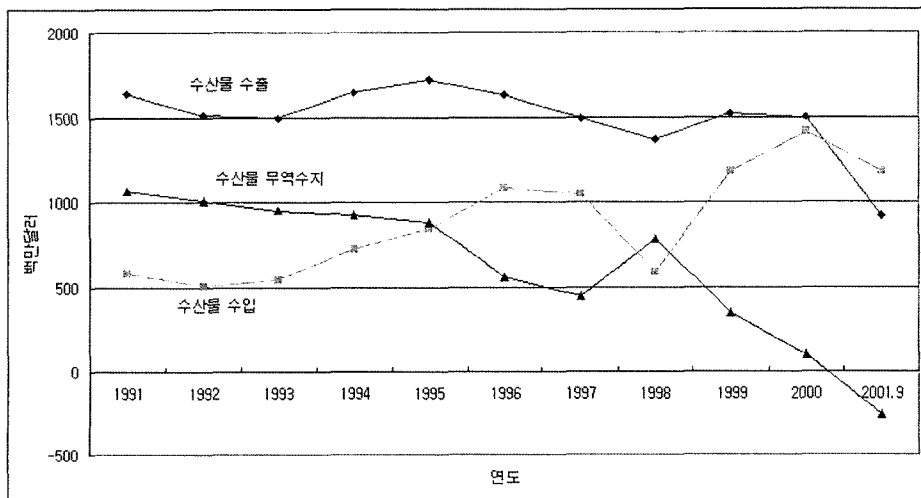
〈표 4〉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 현황

(단위 : 천M/T, Kg)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요	국내소비	1,746	2,318	2,583	3,215	3,202	3,187	2,395	2,748	2,960
	수출	696	867	1,058	1,170	1,191	1,193	1,354	1,232	1,338
	이월	77	94	290	371	427	480	319	582	510
	수출/총수요 (%)	27.6	26.4	26.9	24.6	24.7	24.5	31.5	27.0	29.4
계		2,519	3,279	3,931	4,756	4,820	4,860	4,068	4,562	4,547
공 급	국내생산	2,410	3,103	3,275	3,348	3,244	3,244	2,835	2,911	2,545
	수입	41	91	380	948	1,205	1,189	753	1,332	1,420
	재고	68	85	276	460	371	427	480	319	582
	수입/총공급 (%)	1.6	2.8	9.7	19.9	25.0	24.5	18.5	29.1	31.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수급 및 가격 동향 (내부 자료).

〈그림 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기획특집

활에 빼놓을 수 없는 식량임(※동물성 단백질 총 공급량의 약4할을 공급).

- 수산자원은 수입사료 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연상태에서 자원을 보존·육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식량공급원으로서 역할 기대.

- 국토의 보존과 균형적인 발전 역할.

- 어촌지역이 존재함으로써 국토의 보존과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하고, 3000여개의 도서(특히, 낙도)에서는 어업이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기능 수행.

-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어업·어촌의 전통 문화 계승.

- 삼면의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어촌은 현대물질 문명에 억눌려 온 인간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자원, 전통어법, 어촌풍토와의 조화를 통해 휴식과 여가의 장을 제공하고, 어업활동을 통하여 육성해 온 어업·어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

- 해안안보의 첩병 및 해난구조 기능.

- 어업인에 의한 해안안보 및 해난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III. 제 4차 WTO 각료회의와 수산 분야 협상 쟁점

1. 제 4차 WTO 각료회의의 의의

- 2001년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사막의 나라, 석유의 부국, 카타르 도하(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수산물 무역자유화 의제를 포함시킨 각료 선언문이 채택됨(※각료 선언문은 향후 진행될 실무협상의 의제범위와 협상기간 등을 합의한 결과임).

- 도하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142개국과 이번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180여 국가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언론 등 수 천명이 참가한 세계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음.

-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고, 2005년 1월 1일 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함.

- 따라서 도하 각료회의의 선언문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이 부문별로 양자간 및 다자간 치밀하게 이

〈표 5〉 동물성 단백질 공급실태

(단위 : g/1일 1인당)

구분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A)	36.39	39.28	41.13	40.26	36.36	40.76
축산물	19.73	22.87	24.10	24.60	23.85	25.49
어패류(B)	16.66	16.41	17.03	15.66	12.51	15.27
점유율(B/A, %)	45.8	41.8	41.4	38.9	34.4	37.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각연도).

주 : 1998년은 IMF의 영향으로 국내소비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루어질 전망이다.

- 향후 예상되는 분야별 실무협상은 세계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증대와 자국의 이익 또는 특정산업의 이익확보라는 상반된 장면(차원)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므로, 다양한 시나리오와 치밀한 영향 분석을 통한 사전준비가 필요 불가결함.

•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뉴라운드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과,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에 부가하여 WTO 뉴라운드 출범의 장애국이라는 부담을 각국이 지지 않으려는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음.

• 각료회의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분야별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국(산업)의 이익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음.

- 의견대립이 심하여 조정이 끝까지 곤란하였던 분야는 ① 규범분야(para 28) -반덤핑, 보조금, 수산보조금, ② 농업분야, ③ 환경문제이었음.

- 그 외에도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및 우대문제, 싱가포르 이슈, 이행문제, TRIPS등도 선언문 작성까지 수차에 걸친 조정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의견조정이 끝까지 곤란하였던 일부 분야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지도 모름.

- 특히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 농산물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수산보조금분야, 무역과 환경분야 등은 기존 협정의 개정등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를 다루게 됨.

•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의 채택에 대한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각료선언문 합의도출 실패로 팽배하였던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를 제거함으로써, WTO를 명실공히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되돌릴 수 있게됨.

- 선진국과 개도국·최빈국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불신감을 제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WTO 설립 취지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호혜적 이익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뉴라운드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함.

- 정치적, 경제적 대국인 중국과 대만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됨으로서, 세계경제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각료회의였음.

2. 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의 주요내용

• 각료선언문의 전체 구성.

- 각료선언문은 서문, 작업 프로그램, 작업 프로그램의 조직과 관리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작성됨. 작업 프로그램은 이행,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TRIPS, 규범, 무역과 환경 등 1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업계획 및 협상방식(paragraph 45~52).

- 향후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계획은 3년간으로 하고, 종료시점은 2005년 1월 1일로 하기로 합의.

- 2003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실무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고, 모든 분야의 협상 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하기로 함.

- 협상방식은 전체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

기획특집

로 처리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하며, 조기에 합의된 사항은 조기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협상감독기구로 설치되는 WTO 산하의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

- 비농산물을 위한 시장접근(paragraph 16).
 - 고관세(tariff peak, high tariff), 미소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사전적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하여 협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빈국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포함토록 하여야 함.
- WTO 규범(paragraph 28~30).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하며,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효과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함.
 - 실무작업을 위한 첫번째 단계(initial phase)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구체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하여야 함.
 - 다음 단계(subsequent phase)에서는 제시된 조항을 명확화(구체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검토함.
 - 동 협상의 맥락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화(구체화)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하며,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이 무역과 환경분야(Trade and Environment)와 관련된다는 것을 기록.
- 무역과 환경(paragraph 31~33).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함. WTO 협정의 기존규범과 MEA(다자간환경협정), 무역

관련 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업저버 자격과 절차를 협의, 그리고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함.

- 또한 우리는 수산보조금이 규범분야(paragraph 28)에 제공된 협상의 부분임을 기록함.

- 이행문제(paragraph 12).
 - 이번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 협상대상 이외의 이행문제는 2002년 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TNC)에 보고하기로 함.

• 농업분야(paragraph 13, 14).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하였으며,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설정함. 협상목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임.

- 또한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하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고,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년 3월 31일로 하고, 양허안 제출시한은 제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시킴.

• 이외에도 서비스(paragraph 15), 지적재산권(paragraph 17~19), 무역과 투자(paragraph 20~22), 경쟁정책(paragraph 23~25), 정부조달투명성(paragraph 26), 무역원활화(paragraph 27), 분쟁해결양해(paragraph 30), 전자상거래(paragraph 34), 소규모경

제권(paragraph 35), 무역, 부채, 금융(paragraph 36), 무역과 기술이전(paragraph 38~41), 최빈개도국(paragraph 42~43), 특별 및 차별적 조치(paragraph 44), 최빈개도국(paragraph 42~43)등이 각료회의에서 합의됨.

3.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수산 분야 협상 쟁점과 평가

- 도하 각료회의에서 수산물 협상은 우리나라의 WTO 협상 최우선 전략인 공산품 중심의 시장자유화 전략과 농산물 및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단계적 자유화 전략의 괴리로 말미암아 협상의제 선정에 대한 협상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수산부문의 협상은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수산보조금 문항을 선언문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 및 일본의 주장은 각국의 관심을 끌지 못함.

1) 수산 보조금 분야 협상

- 수산보조금 문제는 WTO/rules의 반덤핑, SCM 협정, 무역과 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논의됨으로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상호 타협점을 모색함.
- 반덤핑과 연계시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수산보조금 : 규범분야 논의)과 농업 및 환경을 연계시킨 EU의 주장(수산보조금 : 환경분야)이 협상을 주도함.
- 미국은 Fish Friends 그룹을 지원군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산보조금 삭제 주장을 극소수 의견으로 철회시키고자 함.
- EU는 무역과 환경부문에서 수산보조금을 다루

자는 주장으로 일관함. 일본은 협상 후반에 보조금 협정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수산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단서로, 제안을 포기함(※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의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

- 개도국은 수산보조금을 비롯한 여타 분야의 보조금에 대하여 무역왜곡측면에만 관심.
- 협상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만의 논의에 대한 불합리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함.
- 결국, 수산보조금은 무역왜곡사례를 포함시켜 WTO Rules부문에서 2단계로 검토하도록 하고, 무역과 환경부문에서 취급 가능성을 남김.
- 결국, 수산보조금은 무역왜곡사례를 포함시켜 WTO Rules부문에서 2단계로 검토하도록 하고, 무역과 환경부문에서 취급 가능성을 남김(※ 다양한 해석 공존).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의 시장자유화 입장이 한국, 일본의 유한한 수산자원 보존의 주장을 압도함.
- 수산보조금의 무역왜곡 측면에 역점을 두되,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경우, 무역왜곡적인 수산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수산자원 보존)에 긍정적인 보조금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임(무역과 환경에서 검토).

2) 수산물 무역자유화 분야 협상

-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협상은 의장 2차 초안에서 제시된 내용(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에 대해 큰 쟁점없이 채택됨).
- 고관세(tariff peak, high tariff), 미소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

기획특집

-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사전적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하여 협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빈국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포함토록 하여야 함.
 -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은 의장 2차 초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큰 논란 없이 채택됨으로써, 수산물 무역자유화는 공산품, 임산물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룹에서 협상이 진행됨.
 - 따라서 수산물 무역자유화는 비농산물 그룹에서 공산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수산물의 특성을 강조한 차별화 전략이 불가피해짐. 향후 실무협상에서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축을 위해 국가별 다양한 입장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러시아, 호주 등 수산물 수출국(Fish Friends Group)은 수산물 관세도 고관세 감축을 통한 공산품 수준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반면에 일본은 관세인하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산물 최대수입국으로서 수산자원고갈방지를 위한 IQ제도 고수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은 자국의 수산업 구조와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라 주장이 가변적일 것이며, 수산물 수출국이라는 입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실무협상에서 결정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율이 공산품의 중심세율인 8% 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관세 기준인 15% 이상의 품목도 총399개 품목중 69.2%(276개, 실행관세 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국의 관세인하 압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IV. 향후 수산 분야의 실무 협상 전망과 대책

- 각료 선언문 협상과정에서 의견조정이 끝까지 곤란하였던 일부 분야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분야별 실무협상은 세계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증대와 자국의 이익 또는 특정산업의 이익확보라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중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보조금의 삭감 또는 제거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관세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이 될 것임.

1. 수산보조금 분야 협상전망과 대책

-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에 언급된 향후 수산보조금의 협상계획은 2단계로 추진됨.

① 1단계 실무작업 :

-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문을 제시하고,
- 명확화되거나 개선된 보조금 조항에 의거 보조금에 포함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협상, 결정함.
-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과 같은 부정적 보조금과 자원회복에 기여하거나 환경에 이로운 긍정적 보조금, 그리고 그

경계가 불분명한 보조금의 처리에 대한 규범을 협상.

② 2단계 실무작업 :

- 1단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폐 내지 감축의 시한을 설정하거나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

• 이상의 실무작업이 종료되면, 구체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국내 수산보조금에 대한 감축 및 제거 등의 실질적인 이행시기.

- 각료선언문과 같이 예정대로 실무협상이 이루어진다면, 2005년부터 지원보조금별 또는 업종별, 국가별(개도국, 최빈개도국) 유예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협상기간 3년 + 유예기간 = 이행시기?)

- 실무협상이 UR과 같이 우여곡절을 겪는다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수산보조금 분야 향후 대책.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떤 수산보조금이 무역왜곡적이며, 또 자원에 부정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보조금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금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면세유(보조사업비 점유율 48%), 영어자금(16%) 등에 대한 철폐 내지 축소 입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으로 수산보조금 논의에 비중이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연구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은 2000년도 CTE 회의에서 제안한 보조금 분류기준을 관철하고자 할 것임.

• 국내적으로는 축소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단계적 개편 추진이 필요함.

- 보조금 지원실태의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수산보조금 지원이 환경, 자원관리 및 일반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임.

- 소규모 보조사업은 자원조성사업, 어업관리사업 등으로 통·폐합하고, 금지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의 자금투입시기를 앞당겨야 함.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생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설명 및 협의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2. 수산물 무역자유화 분야 협상전망과 대책

•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는 비농산물 그룹에서 공산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수산물의 특성을 강조한 차별화 전략은 필요 불가결함.

•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별 다양한 입장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러시아, 호주 등 수산물 수출국은 수산물 관세도 고관세 감축을 통한 공산품 수준 인하를 추진할 것임.

- 일본은 관세인하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 최대수입국으로서 수산자원고갈방지를 위한 IQ제도 고수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은 자국의 수산업 구조와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라 주장이 가변적일 것으로 전망됨.

• 수산물 무역자유화 실무협상 대책.

- 일정부문의 관세인하는 불가피하며,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 또는 관세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획특집

■ 우리나라 수산정책자금의 특징

- 면세유를 비롯한 몇몇 사업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 즉, 면세유를 비롯한 9개 사업의 집행규모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 금지 내지 축소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으로는 면세유와 영어자금과 같이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국고지원형태와 우대금리에 의한 운영자금이 가장 두드러진다.
- 소규모의 사업부문의 비율이 높다. 1999년도에 지원액이 투입된 77개 수산정책자금 집행사업 중 지원액이 0.1%에 못 미치는 사업이 41개 사업이나 된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이 될 것임.

-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관세인하방식중, 관세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UR방식에 근거한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수산물 무역에 관심을 가진 국가가 소수임을 감안한다면 Request-Offer 방식도 적절하게 혼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수산물 민감품목의 관세인하는 수산물 민감품목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산물 민감품목의 관세인하는 공산품의 관세인하의 경우처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수산물의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인 수산물 소비형태 예측과 선호도 분석에 따른 수산물 관세제도 개편이 시급함.

3. 기타부문 전망과 대책

- 수산보조금 및 관세인하 문제 이외에 수산부문의 주요쟁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SPS협정), 원산지표시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절차 문제 등임.
-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세계 각국

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국민에게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위생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임.

- 식품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통하여 선진국들은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만약 우리나라의 수산식품(국내산 수산식품)은 아직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동물성 단백질의 약 4할을 수산물을 통하여 섭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률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문제는 매우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 안전성 확보문제가 세계식품시장의 완전자유화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분쟁의 많은 원인 제공.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산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판매업소 중심의 규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단계 추적조사로 유통단계간 원산지 통보시

스텝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WTO 뉴라운드 출범 이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역에서 다양한 분쟁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임. 따라서 수산물 무역분쟁에 대한 사전적, 철저적인 연구가 시급함.

V. 결론

•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시대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생존 가능한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과제의 해답이 향후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큰 그림일 것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업인 및 정책결정자의 점증적인 사고 또는 점감적인 사고로서는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임.

• 수산물 협상에 즈음해서는,
- 우리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자신있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산업계, 연구기관, 정부(중앙-지방)가 혼연일체로 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상이후, 공(功)은 내 것이고 실(失)은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닌, 공동의 협조(協助)체제가 이룩되어야 수산업에 발전이 있을 것임.

• 무한경쟁시대에 생존 가능한 한국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①생산 : 영세수산업의 규모화(산업인구 및 어선의 규모화), 신어장개발 및 해외어업협력사업의 확대(가칭, 해외어업협력재단 설립) 및 어업의 소득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21세기형 어업어촌구축) 필요.

※자생력 강화정책 ← 어업외소득원 개발 ← 사

회 간접시설 확보.

②유통 : 수산물에 대한 소비형태(활어중심에서 가공품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소비량을 조절하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요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감모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③무역 : 원어수출중심에서 수입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및 수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소비유도(예, 김치).

수출정책의 과학화를 통하여 무역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동물성 단백질, 바다의 맛)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촉진정책도 필요할 것임.

④기금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청정해역 확보를 위한 (민간)기금조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시장개방화(관세, 비관세 철폐)에서 발생하는 타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국가차원에서 약체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제 4차 WTO 각료회의와 수산 분야 시장개방화 대책 (원고개요)

朱 文 培(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기초하여, 앞으로 진행될 수산분야의 실무협상 전망과 향후의 수산부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것임.

•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문화적 기능면에서도 중요한 역

기획특집

활을 담당하고 있음. 국민경제적 위상으로 동물성 단백질 공급기능, 비상시 식량공급기능, 국토의 보존과 균형적인 발전기능,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어업·어촌의 전통문화 계승기능, 해안안보의 첨병 및 해난구조 기능 등을 강조함

1.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의의

-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의 채택에 대한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각료선언문 합의도출 실패로 팽배하였던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를 제거함으로써, WTO를 명실공히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되돌릴 수 있게됨.
- 선진국과 개도국·최빈국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불신감을 제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WTO 설립 취지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호혜적 이익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뉴라운드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함.
- 정치적, 경제적 대국인 중국과 대만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됨으로서, 세계경제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각료회의였음.

2.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수산분야 협상전망과 대책

-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중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보조금의 삭감 또는 제거가 불가피

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관세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이 될 것임.

■ 수산보조금 분야 협상전망과 대책

-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에 언급된 향후 수산보조금의 협상계획은 2단계로 추진됨.
- 1단계 실무작업에서는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문을 제시하고, 2단계로 1단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폐 내지 감축의 시한을 설정하거나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
- 수산보조금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어떤 수산보조금이 무역왜곡적이며, 또 자원에 부정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보조금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금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이 존재함.
- 따라서 국제적으로 수산보조금 논의에 비중이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연구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미국은 2000년도 CTE 회의에서 제안한 보조금 분류기준을 관철하고자 할 것임.
- 국내적으로는 축소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단계적 개편 추진이 필요함.

- 보조금 지원실태의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수산보조금 지원이 환경, 자원관리 및 일반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 소규모 보조사업은 자원조성사업, 어업관리사업 등으로 통·폐합하고, 금지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의 자금투입시기를 앞당겨야 함.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생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설명 및 협의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수산물 무역자유화 분야 협상전망과 대책

-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별 다양한 입장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러시아, 호주 등 수산물 수출국은 수산물 관세도 고관세 감축을 통한 공산품 수준 인하를 추진할 것임.
- 일본은 관세인하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 최대수입국으로서 수산자원고갈방지를 위한 IQ제도 고수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은 자국의 수산업 구조와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라 주장이 가변적일 것으로 전망됨.
-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는 비농산물 그룹에서 공산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수산물의 특성을 강조한 차별화 전략은 필요 불가결함.
- 일정부분의 관세인하는 불가피하며,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 또는 관세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이 될 것임.
-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관세인하방식중, 관세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UR방

식에 근거한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수산물 무역에 관심을 가진 국가가 소수임을 감안한다면 Request-Offer 방식도 적절하게 혼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장기적인 수산물 소비형태 예측과 선호도 분석에 따른 수산물 관세제도 개편이 시급함.

■ 기타부문 전망과 대책

- 수산보조금 및 관세인하 문제 이외에 수산부문의 주요쟁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SPS협정), 원산지표시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절차 문제 등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 안전성 확보문제가 세계식품시장의 완전자유화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 ←무역분쟁의 많은 원인 제공.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판매업소 중심의 규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단계 추적조사로 유통단계간 원산지 통보시스템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WTO 뉴라운드 출범 이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역에서 다양한 분쟁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임. 따라서 수산물 무역분쟁에 대한 사전적, 절차적인 연구가 시급함.

3. 무한경쟁시대에 생존 가능한 한국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시대 및

기획특집

지속가능한 수산업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생존 가능한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과제의 해답이 향후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큰 그림일 것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업인 및 정책결정자의 점증적인 사고 또는 점감적인 사고로서는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임.

- 수산물 협상에 즈음해서는,
 - 우리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자신있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산업계, 연구기관, 정부(중앙-지방)가 혼연일체로 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상이후, 공(功)은 내 것이고 실(失)은 네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닌, 공동의 협조(協助)체제가 이룩되어야 수산업에 발전이 있을 것임.

- 무한경쟁시대에 생존 가능한 한국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①생산 : 영세수산업의 규모화(산업인구 및 어선의 규모화), 신어장개발 및 해외어업협력사업의 확대(가칭, 해외어업협력재단 설립) 및 어업의 소득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21세기형 어업어촌구축) 필요.

※자생력 강화정책 ← 어업외소득원 개발 ← 사회 간접시설 확보.

②유통 : 수산물에 대한 소비형태(활어중심에서 가공품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소비량을 조절하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요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감모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③무역 : 원어수출중심에서 수입국 소비자가 선

호하는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및 수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소비유도(예, 김치).

수출정책의 과학화를 통하여 무역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동물성 단백질, 바다의 맛)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촉진정책도 필요할 것임.

④기금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청정해역 확보를 위한 (민간)기금조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시장개방화(관세, 비관세 철폐)에서 발생하는 타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국가차원에서 약체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수산물 시장 완전 개방화라는 시련에 맞서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수산업의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노력들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어업인이어야 함. 이들 정책과정의 중심에 어업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 흐름을 어업인 스스로가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간 진행될 이행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한국적 수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